

뉴에듀케이션칼리지 장학금 내규

[시행 2008.4.28.] [2024.2.19.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뉴에듀케이션칼리지의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의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 별도의 규정이라 함은 외부 장학금 급여단체에서의 특정한 급여 조건을 말한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3조(예산배정)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4조(지급대상)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생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<별표 1> 중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청자격) 일정 과목이하 수강자 및 휴학자, 대학교 학칙 및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원칙 위반자는 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6조(지급시안의 심의와 승인) 원장은 매학기 과정 별로 장학금 배정 종목과 액수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수여한다.

제7조(신청) ① 교학과는 수혜대상자에게 장학금 수혜대상자임을 통보하고, 수혜대상자는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교학과에 제출한다.

② 주임교수가 복수인 경우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주임교수가 없는 경우 교학과장이 확인한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8조(장학생의 확정) 원장은 각 과정별로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, 이증추천여부,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9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 장학금의 지급 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지급기준액)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본 내규에 따른다. <개정 2024.02.19.>

제11조(지급방법) 교학과는 확정된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.

제12조(이중 지급금지) 각종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. 단, 학교사랑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

제13조(세부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개정내규는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 이전에 지급된 우리법인 및 대학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에 대한 장학금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이 개정내규는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내규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02.19.>

이 개정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장학금 종류와 기준 <2024.02.19.>

장학종류	선발기준	장학금액	비고
성적우수 장학금	① 직전학기 성적 (최)우수자(6과목 이상) ② 금 학기 6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함 ③ 과정별 30명 기준으로 1인 내외 지급	등록금의 50%	
학비감면	① 금 학기 6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함 ②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학과 및 분반 ※ 등록시 감면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함 ※ 학비감면 대상은 패키지장학금, 가족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※ 학습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비감면을 취소할 수 있음	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	해당 학기
패키지 장학금	금 학기 7과목 이상 수강자	등록금의 5%	해당 학기
특별장학금	뉴에듀케이션칼리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	등록금의 전액	해당 학기
학교사랑 장학금 (중복지급가능)	학점은행제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한 자	본인 추천 신입생 등록금액의 10% (본인 등록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)	해당 학기
근로장학금 (중복지급가능)	교학과 및 교수 업무를 지원하는 자	본인 등록금액 범위내	해당 학기
교직원 장학금	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자녀와 형제자매	등록금의 50%	매학기
가족 장학금	뉴에듀케이션칼리지에 부모, 부자, 부녀, 형제, 자매 등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입학하는 자.	각 등록금의 10%	매학기
봉사 장학금	① 과대표로 봉사하는 자 ② 금 학기 6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함 ③ 과정별 30명 기준으로 1인 내외 지급	등록금의 20%	해당 학기
복지 장학금 I	국가생활보호대상자	등록금의 50%	해당 학기
복지 장학금 II	① 학업에 본이 되며 우리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②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③ 금 학기 6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함	등록금의 30%	해당 학기
보훈 장학금	보훈청에 등록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또는 교육지원 대상자	등록금 전액	해당 학기
공로 장학금	① 전국단위 공모전에서 상위입상자 ②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크게 인정되는 자	등록금의 50%	해당 학기
기타	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위원회 의결 금액	